

## ■ 최신 판례 ■

# [지적재산권] 홍보 목적으로 논문을 복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

최승수 변호사 | 김태형 변호사

## 1. 논문복제행위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(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1도5835 판결)

외국 회사로부터 기능성 원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, 그 이전에 같은 외국 회사로부터 같은 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한 다른 국내 회사가 제품 홍보 및 식품의약품안전청(이하 '식약청')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을 받기 위해 작성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논문을 그대로 복사하여 식약청에 다시 제출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## 2. 사실관계

갑 주식회사(이하 '갑회사')는 A외국법인(이하 'A회사')으로부터 리프리놀(LYPRINOL)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, 2002년경 리프리놀의 효능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(이하 '논문 저자')에게 리프리놀의 관절염증 조절 및 관절기능 개선에 대한 임상연구를 의뢰했습니다. 위 논문 저자들은 관절염 환자를 상대로 임상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2002년 5월경 리프리놀의 효능에 관한 논문(이하 '이 사건 논문')을 발표했습니다. 갑회사는 2004년 위 논문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식약청으로부터 리프리놀이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. 갑회사와 A회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자, 을 주식회사(이하 '을회사')는 2008년 5월경 A회사로부터 리프리놀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. 을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논문 저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논문 전체를 직접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했습니다.

### 3. 피고인의 변론 및 대법원의 판단

#### 가. 저작권 양도 또는 포괄적 이용허락

피고인은 이 사건 논문의 저자들이 A회사에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거나 포괄적 이용허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대법원은 논문 저자들이 논문의 해외 출판을 위하여 그 편집을 A회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위임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논문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#### 나. 공정이용 법리

피고인은 공정이용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논문을 복제한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대법원은 피고인이 복제행위를 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"저작물의 공정한 이용"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
#### 다.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

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 속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, 구 저작권법 제2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했습니다. 대법원은 이 사건 논문이 작성된 경위, 피고인이 위 논문을 식약청에 제출함으로써 제품 판매에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,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, 피고인의 행위는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, 위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면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같이 복사권 또는 전송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가 복제허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## 라.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

피고인은 이 사건 논문을 복제한 행위가 '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'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 내부에서 영리 목적으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

## 4. 다운로드 : [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1도5835 판결](#)